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 지식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 지식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 지식

목차

인사말	10
I. 주제별 QnA	12
1. 아동학대, 가정폭력	14
[아동학대]	
Q1 청소년이 받는 학대도 아동학대인가요?	16
Q2 제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7
Q3 아동학대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18
Q4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친구들 사이에 피해사실이 소문 날까 봐 신경 쓰여요.	19
[가정폭력]	
Q5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20
Q6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1
Q7 가정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23
Q8 가정폭력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24
2. 노동	26
Q9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8

Q10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0
Q11	사장님이 일단 일부터 하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셨는데, 문제없을까요?	31
Q12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힌 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33
Q13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면서 근무시간을 오후에서 야간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거절하니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35
Q14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37
Q1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40
3. 금융(빚, 사기)		42
Q16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44
Q17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아저씨한테 ‘대리입금’ 5만 원을 받고 2주가 지났는데, 2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요. 20만 원을 갚아야 하나요?	45
Q18	‘대리입금’ 업자가 돈을 빌리려면 집 주소, 학교 이름,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야 하나요?	48
Q19	‘대리입금’ 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49
Q20	대부업자에게 개통되어 있는 핸드폰을 팔면서 대출받는 건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51
Q21	저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당장 돈을 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54

4. 성착취 56

Q22 성매매는 범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성매수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들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제가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려워요. 58

Q23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

Q24 성매수자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저를 때리지 않았고, 저도 분명 동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62

Q25 성매수자나 성매매를 알선한 언니·오빠·형·누나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요. 64

Q26 성매매를 그만 두었을 때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65

Q2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6

5. 성폭력, 데이트폭력 68

Q28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70

Q29 연인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71

Q30 데이트 폭력은 무엇이고, 성폭력과 어떻게 다른가요? 72

Q31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74

Q32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75

Q33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76

Q34 오랜 시간이 지난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79

6. 온라인 폭력(명예훼손, 모욕) 80

[모욕·명예훼손]

Q35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나요? 82

Q36 모욕과 명예훼손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84

Q37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87

Q38 단독방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88

Q39 온라인 상에서 욕설, 막말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89

Q40 아주 오래 전 명예훼손·모욕 행위로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91

[사이버 성범죄]

Q41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93

Q42 제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이 저를 성희롱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희롱에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95

Q43 제가 스스로 촬영한 제 신체사진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보내 줬는데, 그 사람이 제 신체사진을 다른 곳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96

Q44 저의 동의 없이 제 사진이나 영상, 음성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97

[기타 괴롭힘 행위(카톡감옥, 스토킹 등)]

Q45 원하지 않는데 단체 카톡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온라인으로 알아낸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102

Q46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104

7. 출생신고, 입양, 양육비 106

[출생신고]

- Q47 출생신고가 무엇인가요? 108
- Q48 출생신고는 누가 하나요? 109
- Q49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0

[입양]

- Q50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111
- Q51 입양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12
- Q52 입양을 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113

[양육비]

- Q53 아동·청소년인 제가 직접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116
- Q54 저를 직접 키우지 않고 있는 아버지(어머니)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7

8. 친권, 미성년후견 118

- Q55 친권이 무엇인가요? 120
- Q56 부모 중 누가 친권자인가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애초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친권자인가요? 121
- Q57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친권자가 되나요? 122
- Q58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123
- Q59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때려도 괜찮나요? 124
- Q60 부모님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25
- Q61 부모님이 없거나 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27
- Q62 미성년후견인이 무엇인가요? 128

- Q6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고등학생인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129

- Q64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한이 있나요? 130

- Q65 친권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 병원 진료,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131

II. 마침(부제: 정말 마치고 전에) 132

색인 138

인사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률매뉴얼 책 발간을 기념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벅찬 마음입니다. 이 책은 아직 여물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들을 깊이 헤아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된 여정의 산물입니다.

학교 폭력, 아르바이트 중 겪는 부당한 대우, 낯설고 두려운 금융 문제,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험, 그리고 가정 내 갈등까지...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이들에게, 이 매뉴얼이 따스한 등불이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법무법인 지평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아동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검토하며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이 매뉴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살아 숨 쉬는 매뉴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이 매뉴얼이 그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작은, 그러나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고,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 위원장
이승민 드림

1.

주제별 QnA

작성 이정주
감수 엄선희

‘아동’이라고 하면 흔히 어린이만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모두 아동입니다. 따라서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받는 학대도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②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¹ 아동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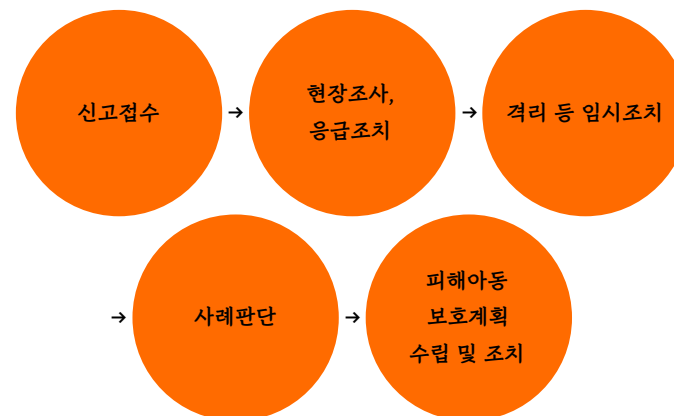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기, 잠을 재우지 않기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기,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기
- 아동·청소년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벌거벗겨 내쫓기
-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가기,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기
- 신체의 일부를 만지기, 몸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촬영하기, 야한 동영상이나 그림을 보여주기
- 부모, 보육시설 선생님 등이 아동·청소년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등을 주지 않기
-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을 버리거나, 아동·청소년을 집에 두고 가출하기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경찰(112)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 시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가정법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떨어져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가해자이고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친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법적 구제 방법은 마칩 페이지 A·B 참고, 친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Q55 참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그림1]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Q3 아동학대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학교 선생님과 같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²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112)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의 이름, 지위 등 인적 사항은 비밀로 보호됩니다.³

Q4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친구들 사이에 피해사실이 소문 날까 봐 신경 쓰여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집행 등에 관련한 공무원, 보조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 선생님등 학교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하게 될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은 그 재판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카메라 등 중계시설을 통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신고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친구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신고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⁴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⁵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아내나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그 밖에 함께 사는 친족 등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인 동시에 가정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가정폭력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정폭력에는 신체폭력은 물론 정서학대, 경제위협, 성(性)적 폭력, 방임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신체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위협하기
-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기
- 끼니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바깥에서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생활비를 주지 않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생활비 사용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기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도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보호하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상황이 긴급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피해아동이나 가족구성원을 집에서 내보내는 등의 조치),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직접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⁶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전국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예요. ONE-STOP 지원센터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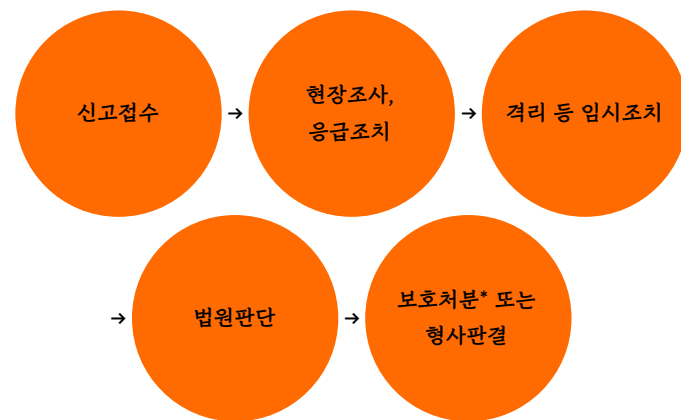


안전 Dream
홈페이지 QR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사항, ②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③ 이혼과 같은 법률문제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⁷ 가정폭력상담소는 각종 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⁸

가정폭력 상담 기관	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남성의전화	02-2653-1366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표1] 가정폭력상담기관



[그림2]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전주가정폭력상담소(legalf.or.kr)

* 보호처분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Q7

가정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처럼 ‘가정폭력에 취약한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⁹은 다른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¹⁰

가정폭력을 행한 자는 「가정폭력처벌법」 및 「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같이 받을 수 있고,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제한,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을 행한 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의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¹¹ 이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가 자신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제공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¹²

작성 정호빈
감수 권영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만 15세¹³ 이상인 아동·청소년이 할 수 있지만, '취직인허증'이라는 서류가 있으면 만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이면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¹⁴

취직인허증은 아르바이트 장소를 관리하는 고용노동청이라는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라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신의 아르바이트 장소를 관리하는 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도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찾기 (아르바이트
장소를 관리하는
고용노동청) QR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QR

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예: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후견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Q61 참고).¹⁵

필요 서류

만 13세 미만	아르바이트 불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취직인허증 발급만 가능)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

[표2] 아르바이트 시 필요서류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은 아동·청소년이 절대로 일할 수 없는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¹⁶ 술을 판매하는 업장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분야

- 법률이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법률이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 숙박업, 유독물 제조·판매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집·카페, 종합 게임장, 만화방 등)
- 교도소·정신병원
- 소각·도살
- 유류 취급 업무(주유소는 제외)
- 2-브로모프로판(전자부품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취급·노출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사장님이 일단 일부러 하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셨는데, 문제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작성할 경우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¹⁷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사용자(사장님)와 근로자(청소년)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지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¹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월급이나 시급,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지(일할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권리를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¹⁹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확인하세요

1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 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확인
- 시급제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쓰여 있지 않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월급제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2 근로계약기간

- 실제로 일할 기간 명시('6개월 정도', '1년 이상'처럼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 언제까지 일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개시일(언제부터 일할지)만 기재

3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 1일 7시간(주 35시간) 기준이 원칙(청소년이 동의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가능)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기준 30분 이상,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정확한 근무요일('매주 2~3일'과 같이 기재하면 안 됩니다)

4 휴일, 연차유급휴가

(유급: 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음)

- 유급휴일·약정휴일(법정 공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확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5 근무지

- 처음에 협의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으므로, 근무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6 기타 사항

- '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

Q12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힌 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임금(시급)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²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도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의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²¹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²² 만약 이보다 적은 시급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사장님에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장님이 적은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었다면, 차액을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시급	9,860원	10,030원
월 환산액	206만 740원	209만 6,270원

[표3] 최저임금 예시

월 환산액: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만약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때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둘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바꿔 말해, 1년 보다 짧게 일하거나 얼마나 오래 일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최소한 최저시급만큼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이라고 해도 사장님이 마음대로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Q13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면서 근무시간을 오후에서 야간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거절하니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사장님은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오후 시간에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바꾸고서 이를 거절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5명 미만의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²³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
- 천재지변(대지진과 같은 재난), 사변(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큰 사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영업기밀 유출, 영업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허위사실 날조·유포, 횡령·배임 등)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갑자기 해고를 했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 장소를 관리하는 노동청(자세한 것은 Q9 참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사장님이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 되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4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법률용어로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고소하여 받는 방법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일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노동청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거친 후 진정·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 시 필요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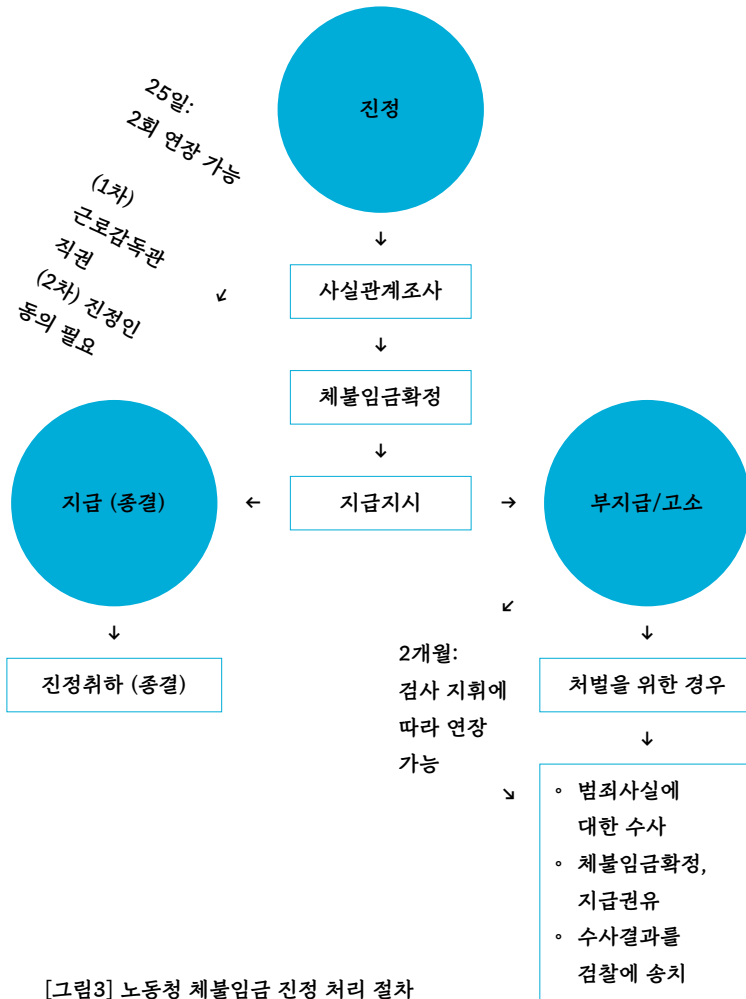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후 신청(아래 QR)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QR

- 구비서류
- 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체불 관련 자료: 임금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 사업주 관련 자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 수 등
 - 기타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진정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진정인 연명부(명단 및 서명) 작성

진정·고소가 접수된 후에는 25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선 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136쪽 마침B 참조 참고). 다만,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 2021. 10. 14.부터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각각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²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일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Q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QR

기관 명칭	기관 소개	연락처 등
알바 신고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홈페이지: youthlabor.co.kr 상담전화: 1644-3119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각 시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40개)에서 근로 관련뿐만 아니라 교우, 학업,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검색해 자신이 속한 지역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종합포털입니다.	홈페이지: www.1388.go.kr 전화: 국번없이 1388(또는 110),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388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ID: #1388

[표4] 부당노동행위 구제지원 기관 목록

작성 박지훈
감수 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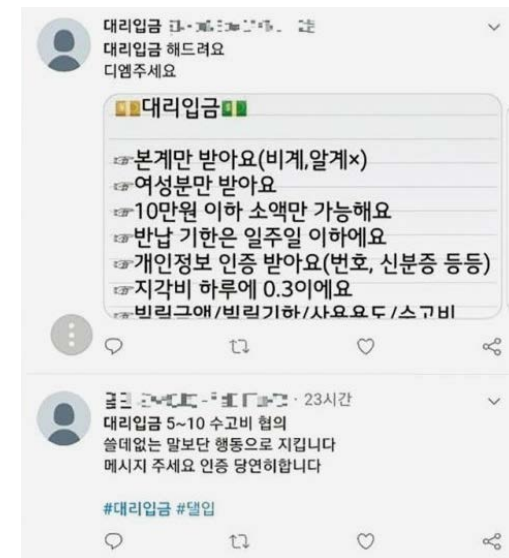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금융이나 법률지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받은 용돈만으로 원하는 활동(게임 아이템 결제, 아이돌 콘서트 티켓 구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을 하기 어려울 때에 고금리의 불법 소액 대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 민법은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²⁵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소액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아저씨한테 ‘덜입’ 5만 원을 받고 2주가 지났는데, 2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요. 20만 원을 갚아야 하나요?

원래 빌린 액수를 과도하게 넘는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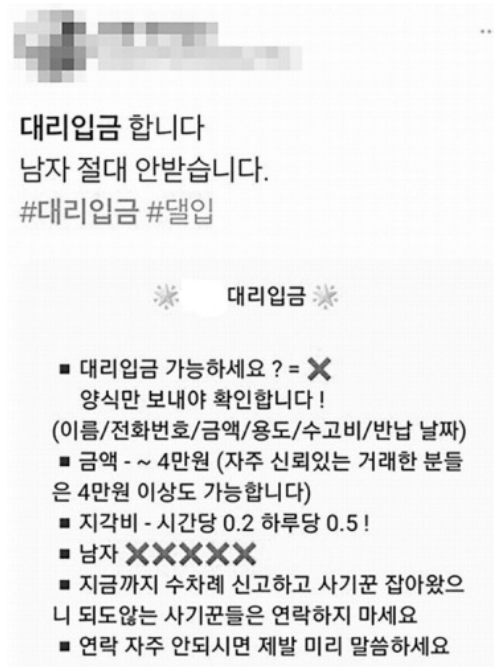
SNS(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대출행위로 ‘대리입금’(이른바 ‘덜입’)이 있습니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돈을 단기간에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것인데, 법이 돈을 빌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연루되게 하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근합니다. 특히 일반 사채업자와 다르게 이자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여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4] 대리입금 SNS 홍보글 예시 (1)²⁶

수고비의 액수는 원래 빌린 돈(원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원금의 약 30%까지 요구합니다. 작은 돈이 없어서 남에게 빌리는데,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72시간 내에 원금의 1.3배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각비를 별도로 매기는데, 보통 1시간에 2천 원 또는 1일에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대리입금한 후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으며 변제를 받지 않고 갚아야 할 금원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동·청소년이 게임 아이템 결제를 위해 5만 원을 3일 내 갚으면 된다는 대리입금(수고비 : 원금의 30%, 지각비 : 미리 말하면 5천 원, 그렇지 않으면 1만 원)을 이용하게 되면, A는 3일 후 이미 사용해버린 5만 원에 1만 5천 원을 가산하여 총 6만 5천 원을 갚아야 합니다. 4일 후부터는 7만 원(최대 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림5] 대리입금 SNS 홍보글 예시 (2)²⁷

5만 원이 부족했던 아동·청소년들은 5만 원을 빌린 후 2주만 지나도 17만 5천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갚아야 하는 돈은 368만 5천 원이 됩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7,300%가 넘는 고리로, 정상적인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법은 돈을 빌릴 때 매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연 20%로 강제하고 있습니다).²⁸

이러한 ‘대리입금’은 「이자제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에 관해서 최고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간 1회성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을 준수해야 하고 「대부업법」은 소액에 대하여 최고 이자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입금’은 그 자체로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 20%를 넘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대부업법」 업자들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²⁹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대리입금’ 업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³⁰

한편, 아동·청소년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16 참조). 이 경우에는 이자를 전혀 낼 필요 없이, 처음에 빌린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대리입금’ 업자가 돈을 빌리려면 집 주소, 학교 이름,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야 하나요?

개인정보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대리입금’의 무서움은 고금리 단기 대출이라는 점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보통 아동·청소년의 휴대폰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부모님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돈을 갚지 못하면, 미리 파악해 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최근 여자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대리입금’을 이용하게 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시킨 다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³¹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대리입금’에 연루되는 순간 범죄 피해를 겪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고,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 ‘대리입금’ 업자로부터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요구받더라도 절대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입금’ 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입금’을 고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대개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협박, 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입금’을 이미 이용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교사, 부모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채무는 어른의 도움을 받으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자세한 방법은 Q16~Q17 참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만한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QR

만약 당장 도움을 처할 어른이 없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대리입금’ 업자와 합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sftc.seoul.go.kr 또는 1600-0700 → 4번).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 3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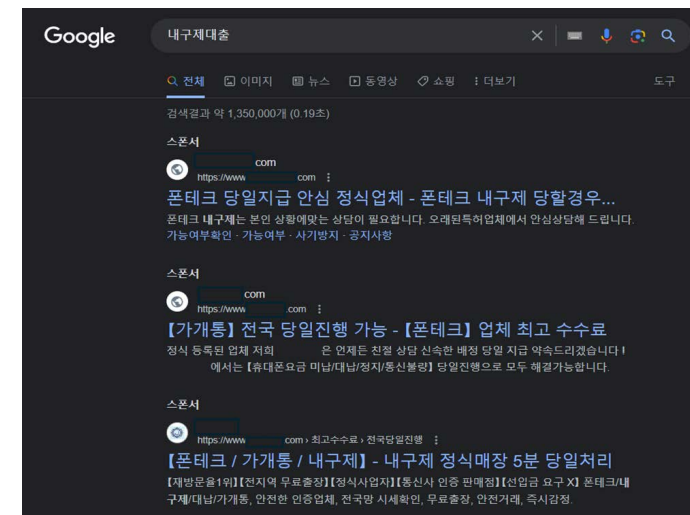
Q20

대부업자에게 개통되어 있는 핸드폰을 팔면서 대출받는 건 아무 문제없지 않나요?

일명 ‘휴대폰깡’ 역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으로 ‘휴대폰깡’이라고 불립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선불유심칩과 함께 ‘내구제대출’ 업자에게 넘기면, 보통 휴대폰 시세 가격의 약 50%에서 70% 정도 되는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내구제대출’은 포탈사이트 검색, 전단지, 광고 명함, 익명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등록 대부업체’라고 하거나 ‘대부업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통신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달콤한 속임수로



[그림6] ‘내구제대출’ 구글 검색결과 예시

현혹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20~30대 청년층, 나아가 10대 아동·청소년까지 이러한 수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업자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을 마구잡이로 구매합니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액이 불어난 뒤인 한참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구제대출’도 ‘대리입금’처럼 금융 관련 법제도의 공백을 교묘하게 이용한 수법입니다. 「대부업법」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만 규제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는 물건이 거래되는 ‘내구제대출’의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³²

다만, ‘내구제대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는 처벌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돈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핸드폰 이용에 필요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³³

‘내구제대출’의 경우, 휴대폰을 받고 돈을 준 업자뿐 아니라 개통한 휴대폰을 업자에게 넘겨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고려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현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³⁴ 또한 업자에게 넘겨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원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QR

만약 이미 ‘내구제대출’을 통해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감독원(1332 → 3번) 또는 경찰(112)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ar.or.kr)에서 휴대폰 개설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반성하고 피해를 조금이라고 줄이려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당장 돈을 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로 인해 빚을 부담하게 될 경우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여러분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의식주 또는 학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입금’이나 ‘내구제대출’과
같은 불법적인 대출받을 필요 없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소년특별지원 복지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000)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QR

작성 광영주
감수 강정은

성매매는 범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성매수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들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제가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려워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³⁵ 형사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이를 알선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가해자가 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이 성을 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럴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봅니다.³⁶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성착취 범죄인 것입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설령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성인인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합의’ 또는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담긴 영상물 역시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³⁷ 따라서 그러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³⁸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성매수 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미국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예외 없이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영국에서는 2천년대 초부터 ‘아동 성매매’라는 말

대신 ‘아동착취(child exploit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SE: Child Sexual Exploitation)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³⁹

피해 아동·청소년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강제수사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조사의 중지, 휴식시간 부여, 귀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잘못이 있는 양 대하거나 ‘너도 처벌될 수 있다’며 겁을 준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오히려 변호사,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착취(성매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주어야 합니다.⁴⁰ 우리나라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매매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⁴¹ 따라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관, 사람들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와 법률 상담에서부터 긴급 일시보호, 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및 치료·회복,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센터에 먼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27 참고).

아동·청소년이 원할 경우, ‘진술조력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⁴² 진술조력인은 변호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와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진술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직접 말하여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매수자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저를 때리지 않았고,
저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성관계 기타
성적행위(촬영·영상제작도 포함)를 하는 것에 동의하
고 대가까지 지급받았더라도, 그것이 성착취
범죄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동의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⁴³
따라서 비록 성착취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
매수자를 찾은 경우에도, 성인인 성 매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익명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적 관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많은 성범죄 가해자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돈, 상품권,
기프트콘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합니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친근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매수자에게 미안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해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동·청소년의 약한 마음을 악용한
‘그루밍’ 성범죄이므로,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나쁜 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성매수자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주위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또다른 전형적인 피해 사례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주거나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조건만남 등을 통해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면서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점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동의했으니까’ 범죄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는
아동·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신매매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⁴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였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⁴⁵

성매수자나 성매매를 알선한
언니·오빠·형·누나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요.

우리나라 법원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협
내지 보복피해로부터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②
피해아동·청소년의 집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 ③ 피해아동·청소년의 집,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 ④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휴대폰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판결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⁴⁶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염려된다면 반드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변 어른 또는 경찰에 알리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호관찰은 가해자 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함으로써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조치입니다.

성매매를 그만 두면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19세가 될 때까지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숙식을
제공받고 상담, 치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과 자활교육, 교육기관에 취학 연계, 취업정보의
제공·교육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⁴⁷

Q2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착취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래와 같은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 및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어 몸에 상처 등의 증거가 남은 경우 곧바로 근처에 위치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 보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 명칭	기관 소개	연락처 등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성폭력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지와 사전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홈페이지: crisis-center.or.kr 홈페이지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전화상담: 02-883-9284 무료법률지원사업 사무전화: 02-883-9285
도담별	성폭력, 성착취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dodamstar20 카카오톡 오픈채팅 '도담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땡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전화: 02-924-1227 카카오톡: ID 검색 → '땡땡119' 추가한 후 1:1로 말 걸기

[표5] 성매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QR



도담별인스타그램
QR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부산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23
대구	대구여성회	053-427-1319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032-874-8297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062-227-8297
대전	여성인권티움	042-222-8297
울산	울산여성의전화	052-244-1555
경기	수원여성인권동움	031-244-7774
강원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032-255-1388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043-224-8297
충남	충남여성인권지원센터	041-576-1388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063-288-8297
전남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061-810-1318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054-255-1318
경남	사회복지법인 범숙	055-715-1388
제주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064-721-8297
특성화*	사단법인 평화의샘(서울)	02-825-1275

[표6] 지역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⁴⁸

*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작성 한선희
감수 김치현

성폭력은 나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⁴⁹ 성희롱이란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주거나 업무, 고용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크게는 강제추행, 성희롱, 강간, SNS·인터넷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강제)추행 ⁵⁰	◦ 일체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 ◦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을 슬쩍 만지고 지나가는 경우 ◦ 복장을 지적하면서 도구 등으로 허벅지나 가슴을 누르거나 찌르는 경우
성희롱 ⁵¹	◦ 성적 불쾌감이 드는 농담을 하는 경우 (연애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묻는 행위 등) ◦ 나의 신체부위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
강간, 유사강간 ⁵²	◦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 ◦ 같이 술을 마신 후 취해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이후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 강제로 나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 나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 ⁵³	◦ 나의 신체, 복장, 사생활, 성관계 시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 ◦ 나의 사진을 SNS나 웹사이트,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나의 사진과 야한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성매매(성착취) ⁵⁴	◦ 재워주거나 술을 사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손님들과 함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만지도록 하는 경우

[표7] 성폭력의 유형

연인사이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상호 동의 하에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더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신체가 나온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무엇이고, 성폭력과 어떻게 다른가요?

‘교제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은 말 그대로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데이트 관계라는 특성상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징조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결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나의 행동에 대한 통제,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감금, 납치, 살인미수도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⁵⁵ 신체적 폭력(폭행, 상해)과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언어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 통제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데이트 폭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기관 등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 팔목 등을 움켜쥐거나 몸을 세게 밀치는 행위 - 머리카락을 움켜쥐거나 당기는 행위 -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 흥기로 위협하거나 담배 등을 이용하여 화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적 폭력	- 본인이나 주변사람을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모욕, 폭언을 하는 행위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
경제적 폭력	-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 내 뭇의 수입, 저축, 용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 - 내 물건을 동의 없이 망가뜨리는 행위
성적 폭력	- 동의 없는 스킨십(원치 않는 키스, 포옹, 등) -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 -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강제로 촬영하도록 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데도 야한 사진 등을 스마트폰, SNS 등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보여주는 행위
통제	- 친구나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등교나 외출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 SNS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행위 - 옷차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행위

[표8] 데이트 폭력의 유형

Q31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데이트 폭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트 관계에는 좁게는 사귀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인관계에서 넓게는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는 이른바 ‘썸’ 단계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사귀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의 ‘전’ 연인관계도 데이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개팅, 채팅, SNS, 데이트 앱, 즉석만남 등을 통한 일회성 만남을 전제로 하는 관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Q32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 행위”란 나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나의 가족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스토킹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헤어진 전애인, 같은 반 친구같이 이미 친분이 있는 상대방도 스토킹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여성긴급전화(1366),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성폭력 상담소, 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예시⁵⁶

- 집,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거나 기다리게 하는 행위
- 내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귀자고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편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학교, 집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SNS 등에 나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애인인 것처럼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첫째,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 ✓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상대방의 폭력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두어야 합니다. 그 후 병원에 가서 반드시 성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특히 성폭력의 경우,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몸을 씻지 않은 채로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 ✓ 카카오톡, 동영상,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은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⁵⁷ 휴대폰 말고도 컴퓨터 등 여러 곳에 분산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 ✓ 폭행을 당한 장소(상점, 지하철역, 도로 등)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CCTV 영상자료가 제3자나 특정인의 재산, 생명, 신체의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CCTV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에 차주의 휴대폰번호가 부착되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사건 이후에 사건 내용을 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 사건에 대해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신저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 ✓ 통화가 어려울 때에는 간략한 위치, 상황을 적어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수신번호: 112) / 서울 OO동 OO빌딩 앞 / 검은색 패딩, 단발머리 10대 학생 /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는 중
- ✓ ‘112 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이 개입한 경우, 같은 성별의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도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보복이 두려울 땐 아래를 참고하세요.

- ✓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 반복된 경우, 임시숙소 제공·주거지 순찰·피해자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위치추적장치(스마트 워치) 제공 등 추가적인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⁵⁸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이나 피해자전담경찰에 이를 요청하면 됩니다.

- ✓ 경찰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용 스마트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위치는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되어 있어 호출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을 한다고 100%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나 가족에게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되므로 협박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복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각 경찰서별 피해자전담경찰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⁵⁹

Q34

오랜 시간이 지난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떤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⁶⁰ 비유하자면 범죄의 ‘유통기한’ 같은 것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 즉 예외가 적용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13세 미만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입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⁶¹
- ✓ 13세 이상의 경우: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⁶² 피해자가 성인이 된 순간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여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면 너무 늦지 않게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성 염주민
감수 정선열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나요?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 경멸적인 감정 표현 등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⁶³ 쉽게 말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개인 채팅이나 비밀 댓글로 직접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단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연성은 ‘널리 퍼질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이러한 말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등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말이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형법」보다 해당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특정인을 헐뜯하는 행위
-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미지·동영상 유포한 행위
-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이에 대해 비난한 행위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하거나 초대 후 집단적으로 나가버리는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이른바 ‘카톡감옥’)
- 배달앱에 특정 가게에 대하여 허위 또는 모욕적인 리뷰를 게시한 행위
- 게임 중 다른 사용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구분	해당되는 경우
모욕죄 ⁶⁴	공연히(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모욕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⁶⁵ [진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허위]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⁶⁶	[진실] 타인을 공격하거나 피해 입힐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허위] 타인을 공격하거나 피해 입힐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표9] 모욕·명예훼손 관련 성립가능한 범죄

모욕과 명예훼손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거나 암시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모욕’이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욕설이나 막말이 얼핏 일상적인 언어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사실(fact)’이 포함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거짓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⁶⁷ ‘간접적이나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⁶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실(fact)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드러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법률용어로 ‘위법성 조각’)라고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⁶⁹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⁷⁰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 게임에서 특정 ID를 가리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X정이 난 새X답게 일단 끼어들고 보조 X병X새X ㅋㅋ”라고 하였는데, 해당 ID가 게임랭킹 1위를 달성
- 게임랭킹 2위인 ID를 특정하며 “길쭉후에 타 길드 기웃거릴 생각하지 말고, 니들끼리 길드 파서 X레기 소굴마냥 뭉쳐서 지내세요”
- 게임 내 상대방에게 “존X 못생겨서 돈 마니 벌면 얼굴부터 고쳐라해라 줌” 등 3회 욕설
- 야간 자율학습 중 침을 뱉으며, “어이 찌따 안 꺼져?”
- 학교 식당 앞에서 특정인을 보고 큰 소리로 비웃으며 “XXX 혼자 밥 먹는다”
- 카톡 프로필에 피해자 사진 올리고 상태 메시지에 “이런 인간 조심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적음
- 같은 과 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특정인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 식당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놈의 새X야, 순경새X, 개새X야”, “XX 개새X야, X도 아닌 젊은 새X는 꺼져 새X야”
- 기타 법원에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인정된 표현: “X같은 잡년”, “결혼 열두 번 할 년”, “사이비 기자년”, “뇌가 없냐! 무뇌야!”, “된장녀”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례

- 포털 게시판에 “OO 지역 OO 학원의 OO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절대 비추”⁷¹ 게시글 작성
- 포털 게시판에, “손XX 발목인대 끊어졌는데 10시간 연습? 돈으로 심판 매수 사실 드러나다.” 댓글 작성
- 유머사이트에, “XX배송?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전환율은 0%가 말이 됩니까” 게시글 작성
- 헤어진 전 애인(가해자)이 피해자의 주변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내 사생활을 폭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것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 단순한 의견을 경멸적인 표현, 욕설 등으로 드러낸 경우	구체적인 사실(허위사실이어도 무관)을 드러낸 경우

[표10]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비교

Q37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가게의 이름, 브랜드 상표 등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다른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여러 사람이 무엇에 대한 표현인지 알아볼 정도만 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⁷² 따라서 이니셜로 표시하거나 가명을 이용한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36 참조).

피해자 언급 없이도 처벌한 사례

- 미용실의 간판 “○○ 헤어랜드” 중 “○○”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송보도하였으나, 자막으로 위 미용실이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음

↓↓

(형사처벌 0)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가 명시되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됨⁷³

단톡방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익명 채팅방에서 그 방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대화 등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며, 설령 단톡방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욕설, 막말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인터넷/모바일에서의 모욕·명예훼손은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이버폭력은 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⁷⁴ 사이버폭력이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으로 규제되어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⁷⁵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⁷⁶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퍼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⁷⁷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인터넷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⁷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방법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긴급신고 (112)
- 민원상담(유료) (18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QR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모욕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범죄)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⁷⁹

Q40

아주 오래 전 명예훼손·모욕 행위로도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모욕죄의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

모욕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해야만
처벌됩니다.⁸⁰ 고소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⁸¹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글 삭제,
카카오톡 기록 유실 등 행위 시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에는
고소기간과 별개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⁸²

명예훼손의 처벌의사 및 공소시효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도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직접 한 말이 문제된
경우(「형법」),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이 문제된 경우(「정보통신망법」),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의한 경우는
7년입니다.⁸³ 따라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의사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충분히
남겨두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명예훼손,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돈(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합의로도 가능하고, 별도 민사재판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①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가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⁸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⁸⁵ 현실적으로 가해행위와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위 '3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특히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Q41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글·음향·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모욕감, 두려움, 위협감 등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예시

- 성적인 메시지 전송(문자, 영상 등)
- 성 관련 개인 신상정보 게시
- 불법촬영물, 사진·영상 합성물(딥페이크), 유포
- 피해자의 신체사진 유포, 유포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성적인 표현, 대화를 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경멸적 감정표현)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Q35와 Q36 참조).

성적 괴롭힘

카톡방이나 게시판 등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예를 들어 메시지 전송 등)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⁸⁶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⁸⁷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등 방법으로 유포·재유포하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촬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포함), 이를 유포·재유포 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⁸⁸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즉, 돈을 받고) 유포·재유포 하는 행위는 더 심각한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⁸⁹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만 하더라도 범죄가 됩니다.⁹⁰

불법 합성 및 유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⁹¹ ‘딥페이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 합성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불법 합성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만 하더라도 범죄입니다.

위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으로 규제되어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⁹²

Q42

제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이 저를 성희롱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희롱에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단톡방에 없더라도 ① 단톡방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② 특정인에 대해, ③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위 Q35, Q36 참조).

사례

학생 A가 단톡방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음담패설함. 특정 여학생을 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한 행위

↓↓

법원: 단톡방에 음담패설에 동조하지 않은 남학생이 있었던 만큼 대화가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 해당⁹³

제가 스스로 촬영한 제 신체사진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보내 줬는데, 그 사람이 제 신체사진을 다른 곳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허락 받은 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장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하거나 야한 형태로 편집하여 남이 볼 수 있도록 전송, 업로드,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야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피해자의 얼굴·신체나 음성을 촬영·녹음한 촬영물 등을 ‘야한’ 형태로 편집한 편집물(이른바 ‘딥페이크’ 포함) 등의 경우, 촬영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⁹⁴

저의 동의 없이 제 사진이나 영상, 음성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한 사진, 영상, 음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됩니다.⁹⁵ ① 게시·유포를 한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방법, ② 정보서비스제공자(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게 요청하는 방법,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service.kocsc.or.kr)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게시, 검색, 전송 등이 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전화(1377)와 비대면·비공개 상담 챗봇(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통해서도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요구

행위자에게 직접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행위자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해당 내용의 삭제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처분,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에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성명,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알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정보가 유통된 곳이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이 국내 정보서비스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하여 해당 정보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행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⁹⁶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요구

카페나 블로그의 게시물, 유튜브 동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등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구글), 인스타그램(메타) 등과 같은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⁹⁷ 카카오 등 정보서비스제공자들은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로 신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제공자의 신고채널

- 네이버 신고센터
 - 카카오 권리침해신고 안내
 - 유튜브 고객센터(콘텐츠 신고)
 -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콘텐츠 신고 방법)
- : 모든 홈페이지 주소는 오른쪽 QR 참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게시, 전송 등 처리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제공자(포털사이트 등)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⁹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⁹⁹

방송통신심의위원회(service.kocsc.or.kr)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구제 조치 방법

그 밖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minwon/main)을 통해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신고센터 QR



카카오 권리침해신고 안내 QR



유튜브 고객센터 (콘텐츠 신고) QR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콘텐츠 신고 방법) Q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QR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 QR

또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관련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 관련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자지원부:
02-817-7959
<https://www.cyber-lion.com/>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https://sisters.or.kr>
-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 010-7705-1318
카카오톡 cybersatto, seoulcenter1318
- 경찰청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또는 지역번호+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QR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피해자지원부
QR



한국성폭력상담소 QR



십대여성인권센터 QR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02-2100-6088
: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QR 참고

기타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의 “유관기관 안내” 참조: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QR 참고

증거수집 필요

위와 같이 삭제 등 청구, 요청, 신고,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캡처 화면(날짜, 링크 등을 볼 수 있도록 캡처 해야 합니다) 등 적절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Q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유관기관
안내 QR

원하지 않는데 단체 카톡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온라인으로 알아낸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톡감옥, 만남요구

단체 채팅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초대 후 집단적으로
나가버리는 행위, 모르는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감옥’ 행위,
온라인으로 알아낸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¹⁰⁰
카톡, 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¹⁰¹
카메라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¹⁰²
야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¹⁰³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야한 내용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성매매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¹⁰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배포, 제공, 광고, 소개, 전시, 상영 등의 게시	3년 이상 유기징역 ¹⁰⁵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¹⁰⁶
사람의 얼굴·신체나 음성의 촬영·녹음물 등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 또는 이러한 딥페이크물을 반포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¹⁰⁷

[표11] 사이버 폭력 행위 유형 및 처벌
(2024년 11월 기준)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송신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화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35와 Q36 참고).¹⁰⁸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더 중한 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트위터 DM 등으로 모욕적인 말, 비방,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즉 타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 차례 반복해서 문자 등을 보내 괴롭히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¹⁰⁹ 또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톱킹행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스톱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¹¹⁰

물리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글·그림을 보내는 것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톱킹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톱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¹¹¹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스톱킹입니다.¹¹²

만약 스톱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주위의 믿을만한 어른(보호자, 학교 선생님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112)에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은 스톱킹행위로 판단할 경우 가해자에게 현실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¹¹³

작성 유현정
감수 김진, 마상미

한 사람의 출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이 출생신고입니다. 사회 속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 아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출생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¹¹⁴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란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만이 출생신고 의무자라고 되어있고, 아버지는 의무자는 아니지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¹¹⁵

만일 아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¹¹⁶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건강, 행복 등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¹¹⁷ 아이를 낳은 곳이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 시설인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다면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¹¹⁸

참고로, 신고의무자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아기의 출생 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기의 출생등록을 직접 하게 됩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기의 등록기준지(신고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므로,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2024년 7월 19일 이전에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났거나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주소는 아래 QR참고) 출생신고할 때에는 자녀의 이름을 적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할 때 그 사실도 같이 적어 내야 합니다.¹¹⁹

* 본(本)은 본인이 속한 가문의 시조가 발생하거나 시작한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인 경우 ‘김해’가 본, ‘김’이 성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홈페이지 QR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親子), 즉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낳지 않은 사람을 자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입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부모와 관계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양자’입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을 가지기 위해 입양을 하거나, 가족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존 친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친부모-자식 사이와 완전히 동일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친양자’라고 하고, 완전 양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¹²⁰

기관입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양기관이 마치 부모처럼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이 입양의 주체가 됩니다.

성인도 입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입양부터 보겠습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딸·친아들이 됩니다. 양부모와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의 가족과도 가족이 됩니다. 양부모의 부모는 조부모가 되고, 친척관계도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친생부모(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가 친권을 가지게 되고, 양부모와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이는 쉽게 말해 양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양자를 법률상 책임지고 키울 의무가 생기고, 친자식뿐 아니라 양자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봅니다.¹²¹ 혼인 중에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혼인신고 시 합의한 경우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권이 양부모에게 있다는 점, 양부모와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긴다는 점은 일반 입양과 동일합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 입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과 본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¹²²

둘째,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종래의 친족관계는 존속되고, 친생부모의 상속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무효로 판단되거나 당사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입양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민법」이 정하는 입양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입니다.¹²³ 법률이 정한 입양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이 타인을 입양한 경우, 미성년자를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¹²⁴ 다만 입양 취소 청구권은 입양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¹²⁵ 반드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본 입양의 무효나 취소는 입양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입양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사정이 생겨 입양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파양’이라고 합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자의 건강, 행복이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의한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지만,¹²⁶ 양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간 협의만 있으면 파양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파양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우리 법은 재판에 의한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지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나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²⁷

- * **패륜 행위**란 도덕이나 윤리를 깨뜨리는 행위로 가족에 대한 살인, 폭력, 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제가 직접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이 아닌 자녀(아동·청소년인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합니다. 부모는 결혼하였는지 여부, 자녀를 직접 키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지며, 그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아동·청소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양육하는 측에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에게도 생활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부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원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송제기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권리만을 얻는 행위, 즉 자기에게 유리하기만 한 행위는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¹²⁸

저를 직접 키우지 않고 있는 아버지(어머니)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¹²⁹ 이렇게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경우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법률용어로 ‘집행권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양육비 청구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QR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감치명령은 어떤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신체를 구속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작성 박아름
감수 마한얼

‘친권’은 부모가 아동·청소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친권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관리를 적절히 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잘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친권은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56 참고).

친권자는 아동·청소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여권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동·청소년 자녀가 따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친권자의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재산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친권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친권자인 부모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애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에 부모가 의논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논하여 누가 친권자가 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의논이 불가능하거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와 가족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나야 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Q61 참고).

친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함께 부담해야 하고,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Q57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친권자가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된다면 직접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미성년자에게는 부모, 아기에게는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친권자가 됩니다.

Q58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친권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한이므로 친권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법원에 친권을 상실하게 해달라거나, 정지하거나,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재산의 관리나 계약 등을 대리하는 업무에서만 사퇴할 수 있고, 이혼할 때 협의하여 둘 중 한 명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친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하므로 친권이 없다고 가족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때리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자에게 징계권, 즉 교육을 목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지만, 2021년 1월 26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권 중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Q1과 Q5 참고).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남용’ 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신해서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친권남용에 해당합니다.¹³⁰ 또한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이해상반행위는 아동·청소년인 자녀가 나중이라도 이를 허락(법적인 용어로는 ‘승인’)이라고 합니다)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됩니다.

- * 이해상반행위는 두 명 이상의 이익이 대립하여 한쪽에게 유리하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한 사람이 살아있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각자의 상속비율을 합의로 정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의 상속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상속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여 친권을 남용할 경우 친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일시정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친권을 상실하게 해달라” 또는 “친권을 일시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인 자녀는 혼자 소송할 수 없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각 지역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의 아동·청소년 기관에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친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므로, 친권의 제한이나 일시정지 등 다른 가벼운 수단으로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친권자인 부모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나은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상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¹³¹

Q61

부모님이 없거나 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을 상실하거나 일시정지 당한 경우 등), 친권자를 대신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後見)’이란 ‘뒤에서 봐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대신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아동·청소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으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부모 중 1명만 사망한다면, 나머지 1명이 친권자로서 친권을 단독행사 하게 되므로, 미성년후견인을 별도로 선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다면,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는 그 역할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미성년후견인이 하는 것입니다.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이 있었다면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의 유언이 없다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정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Q61 참고)

아동·청소년 본인이 “미성년후견인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혼자 소송할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각 지역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의 아동·청소년 기관에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친권자가 아닌 친족(예를 들면 조부모) 중에서 직계혈족(조부모-부모-자녀 관계를 말합니다),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을 말합니다) 등 촌수가 가까운 순서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독인은 부모의 유언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아동·청소년 본인이 감독인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혼자 소송할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있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의 아동·청소년 기관에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고등학생인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은 누군가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누군가로부터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회생 또는 파산한 사람, 범죄 등을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역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친권자였던 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주하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영업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돈을 빌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아동·청소년의 소송행위, 아동·청소년의 상속에 관한 협의에 미성년후견인이 동의할 때에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나중에 휴대전화의 할부금, 통신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한 상황이라면 의사가 동행한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은행계좌 개설은 그 자체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혼자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어플 등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은행 거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혼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11.

마침

(부제: 정말 마치고 전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진정, 소송 등 대부분의 법적
구제 수단은 제3자가 그 피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피해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단계에서 모을 수 있는
증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 ✓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부당한 요구가 담긴
문자메세지 캡처화면,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상담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등과 같이 문자나 카카오톡 캡처화면 피해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좋은 증거입니다.
- ✓ 주의! 가해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추후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를 하는
경우 따로 백업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하면 좋습니다.

가해자, 목격자 등과의 통화 녹음

- ✓ 주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내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만 녹음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 사진과 상해진단서

- ✓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상처 사진을

찍어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발부하는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신고, 상담기록

- ✓ 피해사실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빠르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신고나 도움요청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믿음이 가는 학교 선생님,
지역아동센터나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 소속 직원
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꼭 있습니다.

B

법의 도움이 필요해요. 상담 받고 소송도 진행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미리 예약하여 화상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QR

C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아동·청소년은 인생이라는 모험을 이제 막 나서는 초보 모험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뿐이지, 미숙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마주하는 시련 앞에서 더 많이 아파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 어떤 시련도 겪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상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니면 주변에 괴로워하는 또래가 있다면 이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매뉴얼의 내용을 모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매뉴얼이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작은 반딧불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색인

표색인

- [표1] 가정폭력상담기관
- [표2] 아르바이트 시 필요서류
- [표3] 최저임금 예시
- [표4] 부당노동행위 구제지원 기관 목록
- [표5] 성매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 [표6]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표7] 성폭력의 유형
- [표8] 데이트폭력의 유형
- [표9] 모욕·명예훼손 관련 성립가능한 범죄
- [표10]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 [표11] 사이버 폭력 행위 유형 및 처벌

그림색인

- [그림1]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 [그림2]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 [그림3]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 처리 절차
- [그림4] 대리입금 SNS 홍보글 예시 (1)
- [그림5] 대리입금 SNS 홍보글 예시 (2)
- [그림6] '내구제대출' 구글 검색결과 예시

주석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2025. 7. 19.부터 국내 또는 국제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도 포함됨.

3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4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4조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6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8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60세 이상의 노인·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11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12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13

만 나이: 월과 일까지 계산해서 1년이 꼭 찬 해를 세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30일생은 2024년 4월 30일이 되어야 만 15세가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4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5

「근로기준법」 제66조

1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제40조

17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18 「근로기준법」 제67조

19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20 「최저임금법」 제6조

2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2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5호)

23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4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25 「민법」 제5조 제2항

26 파이낸셜 뉴스 2019. 3. 19.자 기사 "급전 대리입금 싹부터 자른다"

27 서울신문 2021. 5. 12.자 기사 "돈 빌리려면 알몸 사진이라도 보내... '대리 입금' 쓴 10대 등치는 사기 기승"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9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30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3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33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34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35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6호의 2

37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38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69호, 2022. 10. 17. 제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에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광주광역시(2023. 2. 23. 제정), 전라남도(2023. 11. 2. 제정), 제주도(2023. 11. 20. 제정)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39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40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6항,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제2항

41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인신매매방지법」 제6조

42 「성폭력처벌법」 제36조 내지 제39조, 「인신매매방지법」 제18조

4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44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1호

45 「인신매매방지법」 제4조 제1항

46 「청소년성보호법」 제41조 내지 제42조

4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 제1항,
제3항

48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49

여성가족부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
(2021) 5~7쪽 참조

50

「형법」 제298조, 제299조,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5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52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제7조

5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54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55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13~14쪽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2023), 6~7쪽

56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57

“나 스스로”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나
통화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녹음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닌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58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수법,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12호, 2021. 4. 30. 발령·시행)
제28조 및 제29조 참조].

59

[https://www.police.go.kr/
www/security/support/
support0104.jsp](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4.jsp)

60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해요.

61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
제1호

62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6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64

「형법」 제311조

65

「형법」 제307조

66

「정보통신망법」 제70조

6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6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69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i)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ii)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70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7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
IsMain.laf?popMenu=ov&csmSeq
=659&ccfNo=6&cciNo=2&cnpCIs
No=1](https://easylaw.go.kr/CSP/CnpCI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6&cciNo=2&cnpCIsNo=1)

7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7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3

75
「형법」 제311조

76
「형법」 제307조

77
「정보통신망법」 제70조

78
「형사소송법」 제223조

79
「민법」 제750조

80
「형법」 제312조

8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8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8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84
「민법」 제766조

85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402
판결 참조

86
「성폭력처벌법」 제13조

87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8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89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90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제324조

9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93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33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486
판결 등

94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9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9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9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98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37조

9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00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01
「성폭력처벌법」 제13조

10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0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04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105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106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07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08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및 제4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09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제41호

110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11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112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

113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114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115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

116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3항

117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

118
「가족관계등록법」 제50조

119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120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9판)」, 355쪽~359쪽 참조

121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123
「민법」 제781조 제6항

123
「민법」 제883조

124
「민법」 제884조

125
「민법」 제894조

126
「민법」 제989조, 제905조

127
「민법」 제908조의5

128
「민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129
「민법」 제837조

13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참조

131
대법원 1993. 3. 4. 93스3 결정

만든 사람들

제작

법무법인 지평, 공익법단체 두루

집필

곽영주, 박아름, 박지훈, 염주민,
유현정, 이정주, 정호빈, 한선희

감수

강정은, 권영환, 김진, 김치현, 마상미,
마한열, 엄선희, 장품, 정선열

교열, 편집

곽영주, 홍혜인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이승진 도움)

인쇄

으뜸프로세스

special thanks to

문수생, 이승민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 지식

초판 발행

2025년 3월 31일

발행처

법무법인 지평, 공익법단체 두루

Q1 청소년이 받는 학대도 아동학대인가요?

Q2 제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3 아동학대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Q4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친구들 사이에 피해사실이 소문 날까 봐 신경 쓰여요.

Q5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Q6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7 가정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Q8 가정폭력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Q9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Q10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11 사장님이 일단 일부터 하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셨는데, 문제없을까요?

Q12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힌 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Q13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면서 근무시간을 오후에서 야간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거절하니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Q14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Q15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Q16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Q17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아저씨한테 ‘대리입금’ 5만 원을 받고 2주가 지났는데, 2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요. 20만 원을 갚아야 하나요?

Q18 ‘대리입금’ 업자가 돈을 빌리려면 집 주소, 학교 이름,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야 하나요?

Q19 ‘대리입금’ 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20 대부업자에게 개통되어 있는 핸드폰을 팔면서 대출받는 건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Q21 저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당장 돈을 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Q22 성매매는 범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성매수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들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제가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려워요.

Q23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4 성매수자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저를 때리지 않았고, 저도 분명 동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25 성매수자나 성매매를 알선한 언니·오빠·형·누나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요.

Q26 성매매를 그만 두었을 때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2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8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Q29 연인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Q30 데이트 폭력은 무엇이고, 성폭력과 어떻게 다른가요?

Q31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Q32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Q33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34 오랜 시간이 지난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Q35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나요?

Q36 모욕과 명예훼손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Q37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38 단톡방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Q39 온라인 상에서 욕설, 막말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Q40 아주 오래 전 명예훼손·모욕 행위로도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Q41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Q42 제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이 저를 성희롱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희롱에도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Q43 제가 스스로 촬영한 제 신체사진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보내 줬는데, 그 사람이 제 신체사진을 다른 곳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Q44 저의 동의 없이 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Q45 원하지 않는데 단체 카톡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온라인으로 알아낸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Q46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Q47 출생신고가 무엇인가요?

Q48 출생신고는 누가 하나요?

Q49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0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Q51 입양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52 입양을 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Q53 아동·청소년인 제가 직접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Q54 저를 직접 키우지 않고 있는 아버지(어머니)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55 친권이 무엇인가요?

Q56 부모 중 누가 친권자인가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애초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친권자인가요?

Q57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친권자가 되나요?

Q58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Q59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체벌할 수 있나요?

Q60 부모님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61 부모님이 없거나 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Q62 미성년후견인이 무엇인가요?

Q6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고등학생인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Q64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한이 있나요?

Q65 친권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 병원 진료,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